##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66

발의연월일: 2024. 9. 3.

발 의 자:김태호·진종오·윤영석

배준영 • 고동진 • 정동만

서범수 · 박대출 · 김성원

김종양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로 인재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 제를 도입하여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이전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되, 이전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사람은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출신의 경우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타지역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 지역인재와 역차별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지역복귀를 유도함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전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출신의 경우에도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출신 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출신 인재의 지역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본문 중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 1. 이전공공기관등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2.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

한다. 이하 같다)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제외한다.

3.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를 말한다), 중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를 말한다) 및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1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규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
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	역인재 채용 등) ①
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	
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u>당하는 사람</u>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	<u>&lt;단서 삭제&gt;</u>
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	
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	
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	
<u>나 졸업예정인 사람</u> 을 이전공	
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	
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	
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	
여야 한다. <u>다만, 이전지역에서</u>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 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 1. 이전공공기관등이 이전하거 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을 졸업하였거나졸업예정인 사람
- 2.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다만, 이전지역에서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지역에서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

| 함은 제외한다. | 3.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 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를 말한다), 중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 교를 말한다) 및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 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② ~ ⑥ (현행과 같음)